

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저출산대책
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7 월 11 일

여 수 시 장 2023/07/11



여수시 조례 제1922호

붙임 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.

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5호 중 “셋째아 이상”을 “셋째아”로, “셋째 이상”을 “셋째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“넷째아 이상 출산가정”이란 세 자녀를 양육하면서 넷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을 말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중 “300만원”을 “500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둘째아 이상”을 “둘째아”로, “500만원”을 “1,000만원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셋째아 출산가정 : 1,500만원

4.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 : 2,000만원

제4조제2항제1호 중 “2년간”을 “4년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둘째아 이상”을 “둘째아”로, “100만원”을 “200만원”으로, “100만원씩”을 “200만원씩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셋째아 출산가정 : 태어난 해에 300만원을 지급하고, 나머지 금액은 다음 해부터 태어난 달에 300만원씩 4년간 지급

4.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 : 태어난 해에 400만원을 지급하고, 나머지 금액은 다음 해부터 태어난 달에 400만원씩 4년간 지급

⑤ 제2항제1제2호제3호제4호에도 불구하고 출생아가 태어난 다음 해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신청한 해에 제2항에 따라 지급한다.

⑥ 제5항에 따른 지급 다음해부터는 태어난 달에 출산 순위에 따라 100만원, 200만원, 300만원, 400만원씩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조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5. “<u>셋째아 이상 출산가정</u>” 이란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<u>셋째 이상</u> 자녀를 출산한 가정을 말한다.</p> | <p>제2조(정의)</p> <p>---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셋째아</u> -----</p> <p>- - - - - <u>셋 째 아</u></p> <p>-----.</p> |
| <p>〈신 설〉</p> <p>6. (생 략)</p> <p>제4조(출산장려금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등) ①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 2020. 3. 9., 단서 삭제 2020. 12. 31. ></p> | <p>6. “<u>넷째아 이상 출산가정</u>” 이란 세 자녀를 양육하면서 넷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을 말한다.</p> <p>7. (현행 제6호와 같음)</p> <p>제4조(출산장려금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등)</p> <p>①</p> <p>-----</p> <p>- - - - - -----.</p> <p>--</p> <p>1. ----- 500만원</p> <p>2. 둘째아 ----- 1,000만원</p> <p>3. 셋째아 ----- 1,500만원</p> <p>4.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 : 2,000만원</p> <p>②</p> <p>-----.</p> <p>1 ----- .</p> <p>-----</p> <p>----- 4년간 -----</p> |
| <p>1. 첫째아 출산가정 : 300만원</p> <p>2.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: 500만원</p> <p>〈신 설〉</p> <p>〈신 설〉</p> <p>② 출산장려금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첫째아 출산가정 : 태어난 해에 100만원을 지급하고, 나머지 금액은 다음 해부터 태어난 달에 100만원씩 2년 간 지급</p> | |

| | |
|--|---|
| <p>2.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: 태어난 해에 100만원을 지급하고, 나머지 금액은 다음 해부터 태어난 달에 100만원씩 4년간 지급</p> | <p>2. 둘째아 ----- 200만원을 ----- ----- 200만원씩 -----</p> |
| <p><신 설></p> | <p>3. 셋째아 출산가정 : 태어난 해에 300만원을 지급하고, 나머지 금액은 다음 해부터 태어난 달에 300만원씩 4년간 지급</p> |
| <p><신 설></p> | <p>4.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 : 태어난 해에 400만원을 지급하고, 나머지 금액은 다음 해부터 태어난 달에 400만원씩 4년간 지급</p> |
| <p>③ · ④ (생 략)</p> | <p>③ · ④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⑤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출생아가 태어난 다음 해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신청한 해에 100만원을 지급하고, 그 다음 해부터 태어난 달에 100만원씩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.</p> | <p>⑤ 제2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에도 불구하고 출생아가 태어난 다음 해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신청한 해에 제2항에 따라 지급한다.</p> |
| <p>[본조 제목개정 2020. 3. 9.]</p> | |
| <p><신 설></p> | <p>⑥ 제5항에 따른 지급 다음해부터는 태어난 달에 출산 순위에 따라 100만원, 200만원, 300만원, 400만원씩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.</p> |